

《研究基礎資料：翻譯》90-10

蘇聯의 企業法

1990. 12.

韓國法制研究院

蘇聯의 企業法

(1990年 6月 4日 制定)

1. 解 說

1) 立法背景

1990年 6月4日 蘇聯聯邦最高會議에서 채택된 「蘇聯聯邦에 있어서 企業에 관한 法律」은 1987년에 채택된 「國營企業法」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의 時期에 접어들면서 蘇聯에서의 企業에 관한 綜合的 法律이라 할 수 있다. 이 法律은 1991年 1월부터 施行되며, 이 1991年이라는 시점은 리가초프首相이 1990年 5月24日에 最高會議에서 제안한 經濟改革의 基本構想인 「國家의 經濟狀態와 規制된 市場經濟에로의 移行構想에 관하여」에 의하면, 市場經濟의 法的 基本原則의 形成을 위한 準備段階를 완료하고 所有形態의 실제적 다양화와 價格形成制度의 改革등을 포함한 市場經濟의 實質的 移行開始時期의 첫번째에 해당한다. 이러한 市場經濟로의 단계적인 移行構想에서 이 「企業法」은 이미 公布된 所有法(1990年 3月6日)과 함께 특히 現存의 國營企業의 改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페레스트로이카의 時期에 접어들면서 企業에 관한 綜合的 法律로 이미 채택된 「國營企業法」은 企業에게 종래와 비교하여 대폭적인 經營上의 自主성을 인정한 반면, 國家注文制로 상징되는 종래의 이른바 行政的·命令的 經濟管理體系의 요소를 다분히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完備되지 못한 것이었다. 改革運動과 經濟官僚의 타성적 태도의 妥協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는 國營企業法이 오늘날 蘇聯의 經濟危機를 촉진하는 하나의 重大한 原因이 되고 있는 점은 蘇聯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市場經濟로의 移行이라는 일반적인 改革路線이 이미 명확하게 되고 그 法的 基盤整備가 法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提案된 1989年 10月の 初期段階에도 1987年 國營企業法의 根本的 改正은 「社會主義 企業法」이라는 명칭아래 構想되었다는 점이다. 法律의 명칭에서 이 「社會主義的」이라는 형용사가 부가된 것은 「企業法」에 한걸음 나아가서 1990年 3월에 制定된 「所有法」에서

所有形態의 多樣化의 指向이 추구되고, 이것이 「經濟의 脫國家化」의 하나의 특징적인 傾向을 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하튼 蘇聯에 있어서 企業法制는 최근 3年間 「國營企業法」에서 「社會主義企業法」構想을 거쳐 현재 「企業法」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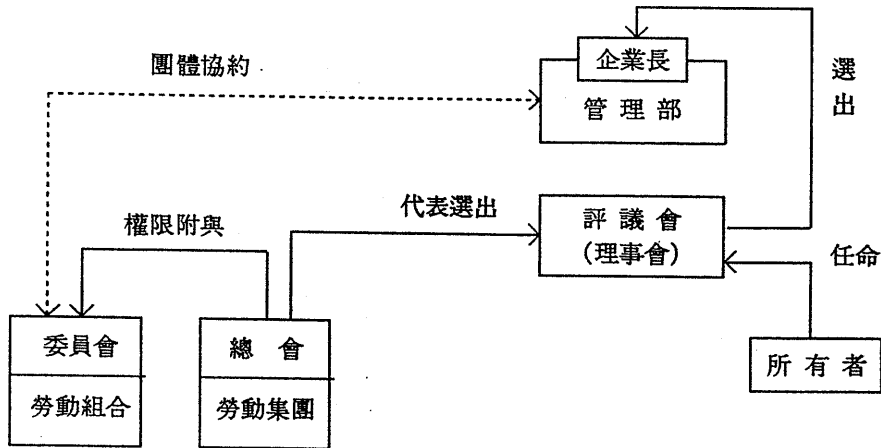
2) 主要內容

이 法의 명칭이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企業法은 蘇聯에 있어서 「企業」을 일반적으로 「生産手段 기타 財産에 대한 所有形態와 관계없이 獨立採算原理에 입각하여 活動」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기본적으로는 이미 制定된 所有法에서 정한 다양한 種類의 企業(個人企業, 集團企業, 株式會社 기타 會社, 國營諸企業, 리스企業등)活動의 法的 基本原則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이 企業法이 豫定하고 있는 다른 種類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등의 「國營企業」이라는 種類도 종래의 관념에 있어서 國營企業과는 달리 經濟部門別의 國家行政機關등에 의한 指示的 管理體系로부터 解放되어, 적어도 이 法의 범위에서는 形式的으로 外國資本이 참가하는 合併企業등과 같은 地位에 놓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통 社會主義産業에 고유한 經營原理로 간주되었던 「經濟計算制」(獨立採算制)도 여기서 단지 非社會主義的인 것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지만, 종래와는 그 性格이 판이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7年 國營企業法 第6條가 企業의 管理라는 條文下에 두었던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와 「中央集權的 指導와 勞動集團의 社會主義的 自主管理의 결합」 또는 勞動集團의 「政治的 核心」으로서의 企業黨組織의 地位라는 規定이 여기서는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위의 사항과 관련하는 國營企業을 포함하여 企業의 內部的인 管理體系가 이른바 勞動者集團에 의한 民主管理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 法 第4編의 「企業管理 및 自主管理」의 諸規定을 도표로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評議會는 이 法에서 신설된 機關이다. 勞動集團의 「總會」는 1983年の 「勞動集團法」에서 도입한 것이나, 그 단계에서는 勞動組合總會에 가까운 역할을 거두는 것이었다. 1987年 國營企業法은 勞動集團總會에 企業長의 「選出」權을 인정하고, 勞動集團의 계속적 활동기관으로서 「勞動集團評議會」를 도입하였으나, 이 단계에서도 勞動



集團評議會와 勞動組合과는 그 역할상 상당 부분이 중복되었다. 금번의 이 企業法에서는 이 두가지의 從業員組織이 일단 經營參加와 勞動者의 權利 옹호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의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新企業法이 상정하고 있는 企業管理體系圖式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951年の 制定 이래 누차 補完·改正되었던 西獨의 共同決定法이 정한 體系에 있는 意味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條 文

前 文

이 法은 所有形態의 多樣化에 의거한 企業의 設立, 商品·貨幣關係의 전개 및 規制된 市場이라는 條件下에서의 企業의 活動에 관한 일반적인 法的, 經濟的 및 社會的 基本原則을 정하는 것이다.

이 法은 企業의 自主性保障을 指向하고 經濟活動의 推進에 있어서 企業의 權利와 義務를 정하며, 企業과 企業, 組織, 人民代議員會議 및 國家行政機關間的 關係를 規制하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다른 法律과 결부하여 效力을 지니는 것이다.

第1章 總 則

第1條 (企業과 그 主要課題) ①企業은 法人으로서의 權利를 가지는 自立的인 經營主體이며, 勞動集團에 의한 그 財産의 利用에 따라 生産物을 生産·販賣하고 作業을 수행하며 서비스를 提供한다.

企業은 生産手段 기타 財産에 대한 所有形態와 關係없이 獨立採算原理에 입각하여 活動한다.

②企業의 主要任務는 그 生産物, 作業 및 서비스에 대한 社會의 需要를 충족하고, 획득한 利潤에 따라 勞動集團構成員의 利益과 企業財産의 所有者의 利益을 실현하는데 있다.

③企業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企業의 定款이 정한 目的에 합치하는 한 모든 種類의 經濟活動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그 目錄을 정한 個別種類的 活動에는 特別한 許可(許可證)를 받아야만 그에 從事할 수 있다.

第2條 (企業의 種類) ①「蘇聯聯邦에 있어서 所有에 관한 聯邦法律」이 정하는 所有 諸形態에 상응하여 다음의 種類的 企業이 活動할 수 있다.

聯邦市民의 所有에 의거한 企業, 즉 個人企業, 家族企業

集團所有에 의거한 企業, 즉 集團企業·生産協同組合·協同組合에 속하는 企業, 株式會社 기타 會社·組合의 形式으로 설립된 企業 또는 관련 會社·組織에 속하는 企業, 社會團體의 企業, 宗教團體의 企業

國家所有에 의거한 企業, 즉 國有聯邦企業, 國有共和國(聯邦構成共和國)企業, 國有自治共和國, 自治州 및 自治管轄企業, 國有自治體企業

②共同出資企業은 法人의 權利를 가지는 設立者들의 財産結合에 의거하여 設立된다. 外國法人 및 外國人은 聯邦의 法令에 따라서 共同出資企業의 設立者로 참가할 수 있다.

③企業은 그 賣出額 및 從業員數에 따라 所有形態에 關係없이 小規模企業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小規模企業의 設立과 活動에 관한 特例 및 小規模企業의 認定節次는 聯邦의 法令으로 정한다.

④ 聯邦에 있어서는 그 設立이 聯邦法令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리스企業을 포함한 기타 種類의 企業이 活動할 수 있다.

第3條 (企業合同) ① 複數의 企業은 그 活動을 조정하고, 그 權利的 保護를 확보하며 關係國家機關 기타 機關 및 國際組織에서 그 共同的인 利益을 대표하기 위하여 自發性的 原則에 따라 產業部門別, 地域別 기타 原則에 따라 聯合, 經濟聯合體, 콘체른 기타 企業合同에 加入할 수 있다. 企業合同에 대해서는 加入企業의 일치된 決定에 따라 個別的 生産·經營 기타 機能의 집중적인 수행을 부과할 수 있다. 上記 構成體의 設立에 있어서는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關係法令이 정하는 獨占排除의 要件을 고려한다.

企業合同은 設立者가 승인하는 定款에 따라 활동한다. 上記의 組織構成體에 加入하는 企業은 그 自立性 및 法人의 權利를 留保하며, 그 企業에게는 이 法의 效力이 미친다.

② 企業合同의 登錄은 이 法이 企業에 관하여 정하는 節次에 따라서 행한다. 合同은 法人이므로 獨立된 綜合貸借對照表, 銀行機關의 決濟口座 기타 口座 및 自己의 명칭을 첨부한 印章을 가진다.

③ 合同은 設立契約(定款)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構成員은 企業의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企業은 合同의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④ 合同에 加入한 企業은 체결된 契約에 따라서 合同을 構成하는 企業에 대한 債務를 留保하여 合同을 脫退할 수 있다.

⑤ 合同은 여기에 加入하는 企業의 決定에 따라 解散한다. 合同의 解散은 企業의 解散에 관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合同解散後의 殘餘財産은 合同의 定款에 따라 合同參加企業間에 配分한다.

第4條 (企業에 관한 法令) ① 國有企業은 이 法 기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따르며, 기타 所有形態의 企業은 이 法 기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 또한 이들 法令이 정하는 경우는 聯邦閣僚會議,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閣僚會議의 決定에 따른다.

② 그 活動이 作業의 組織 및 安全에 대한 고도의 要件 또는 生産技術過程의 不斷性과 관련하고, 또한 그 活動이 管理機能의 集中化를 필요로 하는 個別種類의 聯邦國有企業에 관한 이 法適用上의 特例 및 관련된 企業種類의 目錄은 聯邦閣僚會

議가 정한다.

③ 聯邦의 法人 및 外國法人 또는 外國人이 참가하는 合併企業의 設立 및 活動에 관한 特例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한다.

第2章 企業의 設立과 登錄節次

第5條 (企業設立에 관한 總則) ① 企業은 財産의 所有者(單數 또는 複數) 또는 所有者(單數 또는 複數)에 의하여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 企業 또는 團體의 決定에 의해, 이 法 기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勞動集團의 決定에 의하여, 그 法令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設立할 수 있다.

② 企業은 企業財産所有者(所有者로부터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 企業 또는 組織)의 同意가 있고, 企業이 이미 引受한 契約上의 業務履行이 保障되는 경우에는 現存 企業 또는 組織으로 부터 그 單數 또는 複數의 構成部分을 이 構成部分(單數 또는 複數)의 勞動集團의 發意에 의하여 分離하여 設立할 수 있다.

③ 企業은 合同構成單位의 勞動集團의 決定에 의하여 이 合同構成單位의 合同에 대한 債務를 유보하여, 合同構成單位를 기초로 設立할 수 있다.

④ 企業의 設立 및 活動을 위한 土地區劃 기타 天然資源이 필요한 경우, 그 天然資源의 利用에 관한 許可證은 關係人民代議員會議에 의하여, 또는 法令이 정하는 경우에 關係에크로지감정기관의 積極的인 判定이 있는 경우에는 第1次的인 天然資源利用者에게 交付한다. 土地區劃 기타 天然資源의 供與與否에 관해서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⑤ 企業은 國家에 登錄한 날로 부터 設立한 것으로 보며, 法人의 權利를 取得한다.

第6條 (企業의 國家登錄) ① 企業의 國家登錄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企業의 所在地에 상응한 地區, 市, 市中的 地區의 人民代議員會議 執行委員會가 행한다. 企業의 國家登錄資料는 10日以內에 聯邦財務省에 通知하여 統一國家登錄簿에 登載한다.

② 企業의 國家登錄을 위하여 關係人民代議員會議 執行委員會에 企業設立에 관한 決定書, 定款 기타 聯邦閣僚會議가 정한 目錄에 따른 書類를 提出한다. 企業의 國家登錄은 設立申告書에 필요한 書類를 첨부하여 關係人民代議員會議 執行委員會

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國家登錄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企業設立節次에 위반하거나 또는 設立行爲(書類)가 法令의 要件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拒否할 수 있다. 企業設立의 目的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인한 企業 國家登錄의 거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企業의 國家登錄이 所定 期間內에 행하여 지지 아니하고, 企業設立者가 근거없다고 인정되는 理由로 登錄이 거부된 때 企業設立者는 그것을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第7條 (子會社 및 獨立事務所의 設立) ① 企業은 法人의 權利를 가지는 子會社 및 代表部, 支部 기타 當座計定口座 및 決濟口座를 개설할 權利를 가지는 獨立事務所를 設立할 權利가 있으며, 子會社 및 事務所에 관한 規程을 승인한다.

② 子會社 및 事務所의 立地問題에 관한 關係地方人民代議員會議와의 協議는 企業 設立에 관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第8條 (活動種類에 관한 許可證交付) 企業은 聯邦閣僚會議,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閣僚會議가 정하는 절차로 필요한 許可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第9條 (企業의 定款) ① 企業은 定款에 따라 活動한다. 定款는 企業設立者(單數 또는 複數)가 승인한다.

② 企業의 定款에서 정하는 사항은 企業의 名칭, 所在地, 活動對策 및 目的, 管理機關 및 監查機關, 各 機關의 權限, 企業財産의 形式 및 利潤(所得) 配分節次 및 企業活動停止條件 등이다.

定款에는 企業活動의 特質에 관련하여 기타 法令에 반하지 아니한 事項을 부가할 수 있다.

第3章 企業의 財産

第10條 (財産의 形成과 利用에 관한 條件) ① 企業의 財産을 構成하는 것은 固定基金, 流動經濟 기타 企業의 獨立貸借對照表에 그 價額이 표시된 財貨이다.

② 企業의 財産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 또는 企業의 定款에 따라 所有權 또는 包括的 經濟運用權에 입각하여 企業에 속할 수 있다.

③ 企業財産의 財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設立者의 金錢 및 現物에 의한 出資

生産物, 作業 및 서비스의 販賣·提供과 기타 種類의 經濟活動에 의하여 획득한 所得

有價證券에 의한 所得

銀行 기타 債權者로 부터의 借入金

國家豫算에 의한 基本投資資金과 補助金

組織, 企業 및 市民으로 부터의 無償 또는 慈善目的의 納付金과 交付金

기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財源

④企業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 및 定款에 별도의 規定이 없는 한 建物, 施設物, 設備, 用具, 原料 기타 物的 財貨를 판매하고 다른 企業, 組織 또는 시설에 양도, 교환, 임대하며,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無償 또는 有償으로 貸與하고 또한 그것은 貸借對照表에서 말소할 權利가 있다.

⑤企業은 定款에 별도의 規定이 없는 한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의하여 市民의 所有權 또는 占有權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生産手段 기타 物的 財貨를 市民에게 賣却, 貸與할 權利가 있다. 企業에 의한 市民의 物的 財貨의 無償讓渡 또는 貸與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所有者 또는 所有者에게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의 許可를 얻어 수행한다.

第11條 (天然資源의 占有와 使用) ①企業은 土地 기타 天然資源의 占有와 使用을 所定의 절차에 따라 有償으로 행하고,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無償으로 행한다.

②企業은 自然環境에 대한 生産活動의 바람직하지 아니한 作用의 축소 내지 相殺를 위하여 自然保護對策을 적절하게 행할 義務를 진다. 그 對策에 관한 資金確保는 自己資金 또는 기타 財源으로 이를 承擔한다. 企業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따라서 土地, 水域, 地下資源, 森林 기타 天然資源의 合理的 利用, 再生과 保護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을 정할 責任이 있으며, 그 活動의 結果로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12條 (企業에 의한 法人과 市民의 資金調達) ①企業은 生産活動의 擴大와 改善 및 勞動集團의 社會的 發展을 目的으로 추가적 資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有價證券을 發行할 수 있다.

② 企業의 有價證券發行과 賣出節次, 有價證券의 種類 및 有價證券保有者의 權利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으로 정한다.

第13條 (企業의 財産權保障) 國家는 企業의 財産權을 保障한다. 國家에 의한 企業의 國定資産, 流動資産 기타 企業이 利用하는 財産의 收用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市民, 法人과 國家機關이 企業의 財産權을 침해한 결과 企業이 입은 損害는 法院 또는 國家仲裁委員會의 決定으로 企業에 賠償한다.

第4章 企業管理와 自主管理

第14條 (企業管理 및 自主管理의 組織의 一般原則) ① 企業의 管理는 企業의 定款에 따라서 勞動集團의 自主管理와 그 財産을 主人으로 利用하는 所有者의 權利의 結合에 따라 수행한다. 企業은 自主적으로 管理機構의 構造를 정하고, 定員을 決定한다.

所有者는 直接 또는 所有者가 權限을 부여한 機關을 통하여 企業管理에 관한 그 權利를 行使한다. 所有者 또는 所有者에 의하여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은 그 權利를 企業評議會(理事會) 또는 企業의 定款에 정한 所有者 및 勞動集團의 利益을 표현하는 기타 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② 企業長의 雇傭(任命 또는 選出)은 企業財産의 所有者의 權利이며, 所有者가 직접 또는 所有者가 權限을 부여한 機關, 企業評議會 기타 企業管理의 權利를 委任 받은 機關을 통하여 이를 行使한다.

③ 企業의 活動에 有關한 社會的·經濟的 問題에 관한 決定은 企業管理機關이 勞動集團 및 勞動集團에 의하여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의 참가를 얻어 그것을 起草하여 採擇한다.

第15條 (企業의 勞動集團, 그 權限) ① 企業의 勞動集團은 勞動契約(契約, 協定) 기타 종업원과 企業의 勞動關係를 規制하는 形式에 의거하여 그 勞動에 의해 企業의 活動에 참가하는 모든 市民이 이것을 構成한다.

② 勞動集團의 權限行使의 基本形態를 이루는 것은 總會(協議會)이다.

第16條 (企業勞動集團의 總會[協議會]) 勞動集團의 總會는 다음의 權限을 가진다. 企業財産의 買收와 有關된 問題를 決定한다.

企業管理部와의 團體協約(協定) 締結의 필요성에 관한 問題를 決定하고, 團體協約(協定)의 文案을 審議하며, 勞動組合委員會 기타 機關이 團體協約(協定)에 加入하는 權限을 부여한다.

代表者를 企業評議會에 選出하고, 그 活動에 관한 報告를 呈報한다.

필요한 경우에 勞動集團評議會를 構成하고 그 機能을 定할 수 있다.

第17條 (團體協約[協定]) 團體協約(協定)은 모든 種類의 企業에서 그것을 체결할 수 있으나, 聯邦의 現行法令에 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團體協約(協定)에 의하여 規制되는 것은 企業에서 生産上 및 勞動上の 關係와 勞動保護, 勞動集團의 사회적 발전 및 勞動上の 關係와 勞動保護, 勞動集團의 사회적 발전 및 勞動集團成員의 건강에 관한 問題이다.

團體協約(協定)의 체결 및 그 履行에 즈음한 意見의 不一致가 發生한 경우, 이 意見의 不一致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定하는 절차로서 해결한다.

第18條 (企業評議會[理事會]) ① 企業評議會(理事會)는 企業定款에 別도의 規定이 없는 한 企業財産의 所有者에 의하여 任命되는 代表者와 企業勞動集團에 의하여 選出되는 代表者가 각각 同數로 構成한다.

② 企業評議會의 構成員數는 企業定款으로 定한다. 企業評議會는 企業定款에 規定하는 任期에 의하여 形成된다.

③ 企業勞動集團의 構成員으로부터 選出된 企業評議會의 構成員은 그 任期中 企業으로 부터 解任되거나 職務(給與)上の 不利益을 입거나 또는 그 者를 選出한 勞動集團總會의 同意없이 低賃金의 任務에 配置·轉換되지 아니한다.

④ 企業評議會는 다음의 權限을 가진다.

企業의 經濟的 및 社會的 發展의 일반적인 方向을 決定한다.

利潤의 分配節次를 決定한다.

企業長의 提案에 따라 自企業의 有價證券의 買入 및 他企業 및 組織의 有價證券의 買入에 關하여 決定한다.

子會社의 設立, 企業의 支部 기타 獨立事務所의 設立, 企業의 聯合體 및 合同에 對한 加入 또는 脫退에 關한 問題를 決定한다.

企業의 對外經濟活動의 基本問題에 關한 決定을 채택한다.

企業管理部와 勞動集團間에 發生하는 爭議狀況에 關하여 審議하고, 그것을 解決하

기 위한 措置를 강구한다.

기타 企業定款에 정한 문제를 處理한다.

企業評議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문제를 그 會議에서 決定한다. 評議會에 의한 管理部의 運用·處分活動에 대한 介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企業評議會에 의한 決定採擇의 規則은 企業定款으로 정한다.

⑤ 企業評議會議長은 企業評議會의 會議에서 그 構成員의 公開 또는 機密投票로 선출한다.

第19條 (企業長) ① 企業長을 그 직무에 고용(任命, 選出)하는 경우 그와 契約을 체결하고, 그 契約에 의하여 企業長의 權利, 義務 및 責任, 그 契約保障과 職務解任의 條件을 現行法令이 정한 보장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企業長은 이 法에 의하여 勞動集團總會(協議會) 및 企業評議會의 權限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企業活動의 모든 문제를 自主적으로 決定한다. 企業長은 다음의 權限을 가진다.

委任狀없이 企業의 이름으로 活動한다.

모든 國內 및 外國의 企業, 會社와 組織에 있어서 企業의 利益을 대표한다.

企業의 財産을 처분한다.

勤勞契約을 포함한 契約을 체결한다.

委任狀을 발행한다.

銀行에 決濟口座 기타 口座를 개설한다.

資金處分權을 행사한다.

管理部執行機關의 定員을 승인한다.

命令을 받으며, 企業從業員에게 구속적인 指示를 행한다.

第20條 (副企業長, 企業의 構成部分의 長) ① 副企業長, 管理機構의 部署 및 企業의 構成部分(職場, 工場, 部, 課, 部門 기타 유사한 企業構成部分 및 合同의 構成單位)의 長 또는 職長 및 主任職長은 企業長이 직무에 任命 또는 解任한다.

② 班長은 勞動班集團의 集회에서(비밀 또는 공개투표로) 선출하며, 그 班이 소속하는 企業構成部分의 長이 승인한다.

③ 副企業長 및 企業構成部分의 長의 決定은 해당 종업원의 전부에 대하여 拘束力을 가진다.

④ 企業의 특수성에 關連하는 個別의 경우에는서는 企業定款으로 이상과 달리 副企

業長, 企業構成部分의 長 및 班長의 임명절차를 정할 수 있다.

第5章 企業의 經營的, 經濟的 및 社會的 活動

第21條 (企業의 利潤) ① 모든 種類의 企業에서 經營活動의 財務實績에 관한 기본적·총괄적 指標를 이루는 것은 利潤이다.

② 租稅 기타 國庫에 대한 納付金을 지불하고 企業에 남은 利潤(純利潤)은 企業의 완전한 處分權에 둔다. 企業은 定款에 별도의 規定이 없는 한 純利潤의 利用方針을 自主적으로 결정한다.

純利潤의 利用方針의 選擇에 대한 國家의 作用은 租稅, 稅制上의 特典 및 經濟的 制裁를 통하여 수행한다.

③ 蘇聯聯邦의 法令 또는 企業定款이 정한 경우 純利潤의 一部는 企業의 勞動集團 成員의 所有로 인도한다. 이 利潤의 額數 및 配分節次는 企業評議會(理事會)에서 정한다.

勞動集團成員에 속하는 利潤額은 勞動集團成員의 持分을 구성한다. 勞動集團成員의 持分額에 관해서는 株券을 交付할 수 있다. 企業은 每年 定款이 정하는 金額 및 節次로서 勞動集團成員에 配當을 지급한다.

勞動集團成員은 그 持分(株券의 價額)을 定款에 따라 정한 절차 및 기한에 受領할 權利가 있다.

第22條 (企業從業員의 勤勞所得) ① 個別 從業員의 勤勞所得은 企業의 種類와 관계 없이 企業活動의 최종실적을 감안하여, 從業員個人的 勞動에 의한 기부에 의하여 決定하며 租稅로서 規制되나 그 上限額은 制限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種類의 企業에 있어서 從業員의 最低賃金額은 聯邦의 法令으로 정한다.

③ 賃金의 支給形態, 體系 및 金額과 기타 種類의 종업원소득은 企業이 자주적으로 決定한다.

企業은 從業員의 職能 및 技能資格과 從業員이 수행하는 作業의 복잡도 및 條件에 따라 賃金を 차등시키기 위하여 國家의 賃率表 및 俸給表를 그 지침으로 利用할 수 있다.

第23條 (企業活動의 計劃化) ① 企業은 企業이 실현하는 生産物, 作業 및 서비스에 대한 需要, 企業의 生産上 및 社會的 發展의 확보와 從業員의 개인소득의 향상

의 필요성에 따라 자주적으로 그 활동을 計劃化하고, 발전의 전망을 決定한다.
計劃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生産物, 作業 및 서비스의 消費者와 機械·資材面의 資源供給者와 체결한 契約이다.

② 企業은 契約的인 기반에 따라서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國家의 필요를 위한 作業 및 供給을 수행한다.

③ 企業은 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生態學的, 社會的, 人口統計上 기타 地域住民의 利害와 관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施策에 관해서는 關係人民代議員會議와 協議한다.

第 24 條 (企業과 다른 企業, 組織 및 市民과의 經營的 關係) ① 企業과 다른 企業, 組織 및 市民과의 關係는 經營活動의 모든 분야에서 契約에 따라 形成한다.

企業은 契約의 目的物의 選擇, 債務의 確定 기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반하지 아니하는 經濟的 相互關係의 모든 條件에서 自由이다.

② 自由로운 實現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生産物, 作業 및 서비스의 目錄은 聯邦의 法令으로 정한다.

③ 企業은 그 活動에 있어서 消費者의 利益 및 生産物, 作業, 서비스의 質에 대한 消費者의 要求를 고려하여야 한다.

消費者의 利益과 權利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으로 보조한다.

第 25 條 (資材·機械確保) ① 企業은 市場現況, 잠재적인 去來相對方의 目標 및 價格變動에 관한 情報의 조사에 따라 商品·서비스市場에서 資源을 入手함으로써 그 生産活動과 基本建設에 대한 資材·機械確保를 조정한다.

② 商品·서비스市場에서 資源의 入手는 직접 生産者로 부터 또는 見本市場, 展示場, 資材·機械供給組織 기타 仲介組織을 포함한 都賣商을 통하여 企業이 행한다.

第 26 條 (價格 및 價格形成) ① 企業은 生産物, 作業 및 서비스와 生産폐기물을 自主的 또는 契約的 기반에 따라 정한 價格 및 料金에 의하여, 또는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指定價格에 의하여 실현한다.

② 商品市場에서 獨占的인 地位를 차지하는 企業의 生産物과 經濟에 있어서 價格尺度 및 市民의 社會的 保障度を 결정하는 資源에 관해서는 價格의 國家的 規制를 허용한다.

企業이 生産物, 作業 및 서비스에 대한 國家의 價格·料金規律을 위반한 경우, 과

잉취득액은 沒收한다. 나아가 企業으로 부터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절차와 金額으로 罰金を 징수한다.

第27條 (財務關係 및 信用關係) ① 企業의 金融資源의 財源은 利潤, 減價償却控除, 有價證券의 賣却으로 부터 얻은 資金, 勞動集團構成員·企業·組織 및 市民의 持分出資金 기타 出資金 및 기타 收入이다.

② 企業은 商業的·契約的인 原則에 따라 銀行의 貸付金を 利用할 수 있다.

③ 企業은 資金을 기탁하고 모든 種類의 決濟, 信用 및 出納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企業登錄地의 任意의 銀行에 決濟口座 기타 口座를 개설하고, 또한 銀行의 同意를 얻어 기타의 銀行에 그러한 口座를 개설할 權利를 가진다.

④ 國庫에 대한 納付金 및 賃金の 지급을 포함하여 企業의 모든 決濟는 決濟書類의 도착(지불기한만료)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企業의 그 자신의 債務에 관한 他企業과의 決濟는 銀行機關을 통한 환어음으로 하는 것을 常例로 한다. 現金에 의한 企業 및 市民과의 決濟는 蘇聯國立銀行이 승인하는 決濟·出納業務規則에 따라서 행한다.

⑤ 企業은 借入金의 使用에 대한 利子支給과 마찬가지로 買受人에 의한 利子支出을 수반하여 對價後給으로 生産物을 販賣하고 作業을 遂行하며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 그러한 商行爲의 形式을 구비하기 위하여 企業은 經濟去來關係에서 手票를 使用할 수 있다.

⑥ 企業은 信用契約 및 決濟規律의 순서에 대하여 전적으로 責任을 진다. 經濟에 관한 그 債務를 계통적으로 辨濟하지 아니한 企業은 銀行에 의하여 支給不能者로 선고된다. 그러한 企業에 대한 措置 및 그 適用節次는 聯邦의 法令에 따라 銀行이 정한다.

第28條 (企業의 對外的 經濟活動) ① 企業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따라서 自主的으로 對外的 經濟活動을 수행할 權利가 있다.

② 外貨에 의한 賣出額은 企業의 外貨收支口座에 계상하여 企業이 自主的으로 運用한다.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地方豫算에 대한 外貨控除는 당해 企業이 그 外貨資金에서 행한 직접적 外貨支出을 제외한 企業의 外貨에 의한 賣出額으로 행한다.

③ 聯邦, 共和國 및 地方豫算에 대한 控除率은 聯邦의 法令으로 規制한다. 企業의 外貨資金에 관한 기타 控除는 금지된다.

- 第29條 (企業의 社會的 活動) ① 勞動集團의 構成員 및 그 家族의 勞動, 生活 및 健康條件과 義務的 의료보험에 의한 保障의 改善問題는 企業管理部의 參加를 얻어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따라서 勞動集團이 決定한다.
- ② 企業은 企業의 모든 勞動者에 대해서 完전한 勤勞條件을 확보할 義務를 부담하며, 法令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勞動者의 건강 및 勤勞能力에 가한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 ③ 年金生活의 혜택을 받기까지 企業에서 勞動한 바 있는 年金受給者는 企業의 從業員과 동등하게 医疗서비스, 住宅 및 保養·疾病豫防施設利用券의 확보에 관하여 企業이 가지는 條件을 享有하며, 또한 勞動集團의 總會(協議會)의 決定에 따라 기타 社會的 서비스 및 特典을 享유할 수 있다.
- ④ 企業은 婦人의 勞動 및 生活條件을 개선하고, 年少者를 가진 婦人에게 短縮勤勞時間에 의하여 주로 周間作業을 保障하며, 妊娠中의 婦人을 有害性이 없는 勞動條件下에서 輕度の 作業에 배치하고, 또한 婦人에게 法令이 定하는 기타 特典을 제공할 義務를 진다. 有害한 勞動條件을 가진 企業은 勞動集團의 同意를 얻어 婦人에게 輕度の 作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개의 工場 및 作業室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勞動集團은 勞動에 의하여 획득한 資金 가운데 消費에 相當하는 部分의 範圍內에서 從業員을 위하여 自主的으로 追加的인 休暇, 短縮勤勞時間 기타 社會적인 特典을 둔다.
- ⑥ 企業은 의료, 아동, 文化·계몽, 학습 및 스포츠시설, 共同給食組織과 勞動集團에 봉사하나 勞動集團에 포함되지 아니한 組織의 勞動者에 관하여 物質的 報償을 行할 수 있다.
- ⑦ 企業에 대한 市民의 요망 및 호소에 따른 문제의 檢討와 解決은 오로지 企業管理部의 義務이며, 市民自身에게 맡길 수 없다.

第6章 企業과 國家

第30條 (企業의 權利 및 利益의 保障) ① 國家는 企業의 權利 및 適法的인 利益水準을 보장한다.

企業은 經營 기타 活動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 發意로 現行法令에 반하지 아니하

는 모든 決定을 수행할 수 있다.

國家機關, 社會團體 및 協同組合機關의 企業의 經營 기타 活動에 대한 介入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한 企業의 活動에 대한 統制實施에 관련된 國家機關의 권한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聯邦, 共和國 및 地方國家機關과 社會團體 및 그 公務員은 企業에 關한 決定의 채택에 있어서, 또한 企業과의 關係에 있어서 이 法의 諸規定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國家機關 및 公務員은 法令이 정하는 權限에 의하여서만 企業에 對한 指示를 할 수 있다. 國家機關 기타 機關이 該 權限 또는 法令의 要件에 合치하지 아니한 行爲를 한 경우, 企業은 法院 또는 國家仲裁委員會에 該러한 行爲의 無效를 要求하는 訴訟를 提起할 수 있다.

上記 國家機關 기타 機關 또는 그 公務員이 발한 企業의 權利를 침해하는 指示를 실행한 結果, 또는 該러한 機關 또는 該 公務員이 企業에 關하여 法令이 定한 義務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結果로서 企業에 發生한 損害는 該 機關이 賠償한다. 損害賠償에 關한 분쟁은 法院 또는 國家仲裁委員會가 該 權限에 따라 解決한다.

第31條 (企業의 經營活動의 法的 및 經濟的 條件) ① 國家는 企業에 對해 該 所有 形態에 關係없이 平等한 法的 및 經濟的인 經營活動條件을 보장한다.

② 國家는 經濟的 技術과 자극의 힘을 빌려 規制되고 있는 市場의 발전을 촉진하고, 反獨占的인 措置를 실시하여 모든 勞動者의 社會的 保障을 확보한다. 國家는 生産活動의 技術적 改善을 行하고, 무엇보다도 發見, 發明 및 合理化提案을 도입하려는 企業에 對해서 優待條件을 부여한다.

國家行政機關은 經濟的인 技術, 즉 預金 및 交付金에 對한 利子, 有價證券에 依한 所得, 價格 및 租稅, 優待稅制 및 經濟的 制裁, 特別助成金 및 補助金, 換率, 減價償却率, 社會的 生態學的 기타 基準 및 標準量指標를 利用함으로써 企業과의 關係를 수립한다.

第32條 (會計 및 報告) ① 企業은 該 活動實績에 關하여 業務計算 및 簿記計算을 行하고, 統計報告書를 작성한다.

② 國家統計報告書의 形式은 國家統計機關이 定하여 事實적 資料를 포함한 報告書의 提出處와 提出期限을 付記한다. 이 法이 定한 節次에 위반하여 統計報告書의

提出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國家統計報告書에 포함되지 아니한 資料는 契約의 原理에 따라, 또는 法令에 의하여 企業活動의 개별 측면에 대하여 統制를 실시하는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의 요구에 상응하여 企業이 그것을 提供할 수 있다.

③ 企業의 公務員은 國家統計報告書의 變改에 관하여 法令이 정한 職務規律上 物質的 또는 刑事上 責任을 진다.

第33條 (企業의 營業上 秘密) ① 企業의 營業上 秘密이란 國家機密이 아닌 정보이며, 生産, 技術學上의 情報, 管理, 財務 기타 活動과 결부하여 그 公表(양도 또는 누설등)가 企業利益에 損害를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營業上의 秘密을 이루는 情報의 形成 및 範圍와 그 保護의 規則은 企業의 長이 정한다.

企業活動種類 가운데 그에 관한 情報가 營業上의 비밀이 아닌 것은 환경오염 기타 社會에 損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活動에 관한 情報를 企業이 은폐하는 것을 事前에 防止하기 위하여 聯邦閣僚會議가 이를 정한다.

③ 企業의 營業上 秘密을 이루는 情報의 폭로 및 그러한 情報의 保護規則違反에 대한 責任은 聯邦의 法令으로 정한다.

第34條 (企業의 責任) ① 企業은 契約上의 義務, 信用·決濟 및 稅制上의 規律, 生産物의 質에 관한 要件 기타 經營活動遂行規則의 위반에 관하여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한 財産的 責任을 완전히 진다.

契約條件의 違反에 대한 罰金 및 違約金의 지불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의 賠償을 이행하더라도 企業은 消費者의 同意가 없으면 生産物의 引渡, 作業의 遂行 및 서비스의 提供義務의 이행을 면할 수 없다.

② 企業은 土地 기타 天然資源의 합리적 이용 및 오염 기타 有害한 作用에 대한 環境保護에 관한 要件의 불이행 및 生産의 完全規則, 위생·보건기준과 從業員·住民 및 生産物의 소비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要件의 違反으로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고, 法令이 정한 金額의 罰金を 납부할 義務를 진다.

所定の 天然資源利用規律에 위반하는 企業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절차로 違反事項을 제거하는 동안 그 活動을 停止시킬 수 있다.

第35條 (企業의 活動에 대한 統制) ① 企業의 財務·經營活動에 대한 종합적 監査는 所有者의 發議로 1년에 1회까지 行할 수 있다.

②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개별측면에 대한 檢査業務를 하는 稅務 기타 國家機關은 필요한 경우 엄격히 그 權限의 범위내에서 그러한 檢査를 행할 수 있다. 企業은 그 國家機關의 權限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國家機關의 要求를 거절하거나, 또한 그 統制의 對策에 속하지 아니하는 資料에 관해서는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權利가 있다.

③ 모든 種類의 檢査 및 監査는 企業의 經營活動의 效率을 向上시키고 그 正常的인 活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監査 및 檢査결과는 企業에 通知한다.

第36條 (企業과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人民代議員會議의 關係) ① 企業과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機關의 상호관계는 이 法 기타 그 機關의 權限을 정한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따라서 구성한다.

② 企業은 엄격한 自發性的의 原則에 따라 聯邦構成共和國 및 地方人民代議員會議가 용도를 특정한 豫算外財政資金形成에 참가할 權利가 있다.

③ 企業은 任意的인 契約原則에 따라 地方人民代議員會議가 地方豫算으로 부터 支出하여 실시하는 地域의 경제적 및 社會적 발전에 관한 活動에 參加한다.

企業은 地方人民代議員會議 또는 國家機關의 決定이 있는 경우 그 機關의 支出로 勞動能力이 인정된 者를 위하여 職場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企業의 부담으로 建設된 住宅은 企業勞動集團의 同意가 없으면 地方人民代議員會議 기타 機關은 그것을 收用할 수 없다.

第7章 企業의 解散 및 改組

第37條 (企業의 解散 및 改組의 條件) ① 企業의 解散 및 改組(合併, 吸收, 分割, 分離, 再編)는 企業財産의 所有者 또는 당해 企業을 설립하는 權限을 가진 機關 또는 法院, 仲裁委員會의 決定으로 한다. 企業의 改組에서 生態學上 社會的, 人口統計上 기타 地域住民의 利害와 관련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關係人民代議員會議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 企業은 다음의 경우에도 解散된다.

法令이 정하는 條件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企業의 活動을 금지하는 決定이 행하여 지고, 이 決定이 정하는 期間內 그 條件의 준수가 保障되지 않거나 또는 企業의 活動種類가 변함이 없는 경우

法院의 判決로 企業設立에 관한 행위가 無效로 된 경우

기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이 정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③ 企業을 解散 및 改組하는 경우는 해고되는 從業員에게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令에 따라서 그 權利 및 利益을 보장한다.

④ 企業은 國家登錄簿로 부터 당해 企業이 抹消된 때로부터 改組 또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⑤ 企業이 다른 企業과 合併하는 경우 각 企業의 財産上의 權利義務는 전부 合併結果 設立되는 새로운 企業에 이전한다.

企業이 다른 企業을 흡수하는 경우 흡수되는 側의 企業의 財産上의 權利義務는 전부 흡수하는 側의 企業에 이전한다.

⑥ 하나의 企業을 分割하는 경우 分割되는 企業의 財産上의 權利義務는 分割에 관한 證書(貸借對照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部分이 그 分割의 결과 설립되는 複數의 企業에 이전된다.

하나의 企業에서 單數 또는 複數의 企業을 분리하는 경우, 分離되는 企業의 財産上의 權利義務는 分割에 관한 證書(貸借對照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部分이 분리되는 각각의 企業에 이전한다.

⑦ 하나의 企業을 다른 企業에 再編하는 경우 해당 企業의 財産上의 權利義務는 전부 새로이 設立되는 企業에 이전한다.

第38條 (清算委員會) ① 企業의 清算은 所有者 또는 所有者로 부터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으로 구성하는 清算委員會가 수행하며, 또한 企業이 破産한 경우에는 法院 또는 仲裁委員會가 이를 수행한다. 해당 機關의 決定이 있는 경우 清算은 그 管理機關에 의하여 代表되는 企業自身이 수행할 수 있다.

所有者, 法院(仲裁委員會) 또는 企業設立의 權限을 부여받은 機關은 企業의 解散에 관한 決定을 내린 때 清算의 절차 및 그 기간과 債權者에 의한 請求申請期間을 정하며, 이 기간은 解散發表時로 부터 計算하여 2個月以下로 할 수 없다.

② 清算委員會 기타 企業의 清算을 수행하는 機關은 企業所在地의 公式新聞에 企業의 清算 및 債權者에 의한 請求申請節次와 期間에 관한 公告를 게재한다.

清算委員會(清算을 실시하는 機關)는 이와 동시에 企業에 대한 債權者의 負債를 수집하여, 債權者에게 企業의 解散을 통지하여 그 請求確認事務를 행할 義務를 진다.

清算委員會(清算을 실시하는 機關)는 清算企業이 현재 가진 財産을 평가하고, 債權者와 清算을 행하며 清算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그것을 所有者 또는 清算委員會를 任命한 機關에 제출한다.

第39條 (債權者의 請求에 대한 辨濟) ① 清算企業에 대한 債權者의 請求는 이 企業의 財産으로 辨濟한다. 이 경우 第1順位로 國庫에 대한 負債를 變제하고, 清算企業의 使用權에 속하였던 土地의 再肥沃化를 위한 支出을 補償한다.

② 申請을 위하여 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確認되거나 申請하였던 請求는 第1順位の 請求, 確認이 있었던 請求 및 所定の 기간내에 申請한 請求에 관하여 辨濟를 한 후 殘餘企業財産으로 辨濟한다.

③ 財産不足을 이유로 辨濟되지 아니한 請求는 效力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清算委員會(清算을 실시하는 機關)에 의한 確認을 받지 아니한 청구도 債權者가 請求의 全部 또는 一部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個月以內에 請求履行의 訴를 法院 또는 國家仲裁委員會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效力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④ 企業의 清算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企業이 市民의 肉體的 損傷 기타 健康障害 또는 死亡에 關係하여 支出하여야 할 定期給付金은 一括支出한다.

⑤ 企業의 清算이 행하여진 경우 勞動集團의 構成員의 持分은 債權者에게 辨濟를 한 후, 勞動集團構成員에게 現金 또는 有價證券으로 支給한다.

⑥ 債權者 및 勞動集團構成員의 청구에 대하여 辨濟를 한후 잔여재산은 所有者의 指示에 따라 利用한다.

⑦ 企業의 改組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 企業의 權利義務는 그 權利承繼者에게 이 전한다.

〈朴英道譯〉

〈參考資料〉

・ペレストロイカの新企業法・解説, 法律時報 1990年 10月號

《研究基礎資料：翻譯》 91-10(通卷 第10卷)

蘇聯의 企業法

(非賣品)

1990년 12월 15일 인쇄

1990년 12월 20일 발행

편집 및 발행 한국법제연구원
인쇄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103
전화 : 722-0163~5
FAX : 722-2900

등록번호 1981. 8. 11 제1-190호

